2026년 2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도 영향 점검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에 15%의 임시 관세를 발표했으며, 향후 국가 안보(232조)나 불공정 무역 관행(301조) 등 다른 법적 트랙을 활용해 조사·검토를 진행한 뒤, 관세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로 인도는 기존에 협상 중이던 18%보다 낮은 관세 적용받게 됨

인도 입장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헤드라인 관세를 낮추고,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2월 7일부로 인도에 부과하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징벌적 관세 25%를 철회했으나, IEEPA 기반 상호관세 25%는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양국은 해당 상호관세를 18%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일률 15% 관세 체계로 전환되면서 인도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논의되던 18%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진행 중이던 협상에는 향후 5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과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이 포함되는 등 인도 측 부담이 다소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전 5개년 대미 수입액이 약 2,100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5,000억 달러는 과거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무역수지 악화 및 환율 약세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고,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농민 단체의 강한 반발과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는 등 정치·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관세 인하를 전제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며 잠정 합의를 도출해 온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고율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조기 타결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약화됐고, 핵심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인도는 2월 23일부터 3일간 예정돼 있던 미국 방문을 연기하며, 변화된 관세 환경을 반영해 협상 조건을 재점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미 수출 환경도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 국면에서 미국향 수출이 경쟁국으로 이전되는 흐름이 확인됐던 보석류와 섬유의복 등 품목은 관세 격차 축소에 따라 주문 정상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고율 관세 부담 완화 및 협상 여력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기대

증시 관점에서는 그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쟁국 대비 고율 관세 부담이 완화됐고, 인도의 협상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투자심리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수의 하방 압력 또한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다른 법적 트랙을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232조나 301조에 기반한 관세는 명확한 상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만큼 관세 경로의 가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책 변수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은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① 미국의 추가 관세 트랙 가시화 여부, ② 인도–미국 협상 재개 여부, ③ 기존 잠정 합의 조건의 수정 범위 및 세부 내용이다.

차트 1.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관세 기본 내용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tion, 하나증권

차트 2. IEEPA 외 관세 부과 법적 권한

미 IEEPA 외 관세 부과 권한				
관세 부과 근거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관련 사항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 안보 위협	외국의 차별적 행위
사전조사 필요 여부	X	O	O	X
기간 상한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 필요)	4년 (요청 시 검토 후 연장)	X	X
관세율 상한	15%	X	X	50%

자료: 하나증권